

항소이유서

[담당재판부 : 청주제1행정부 (나)]

사 건 2021누50964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답결정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 B, C, D, E
피고 (피항소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항소인)는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를 제출합니다.

1. 제1심 판단과 불복범위

가. 이 사건의 청구내용

5.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2021학년도 수능**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는 각각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중 하나이다. 행정부 수반이 소속된 정당의 의회 의석률은 갑국 35%, 을국 65%이며, 양국 모두 무소속 의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표는 질문에 따라 갑국과 을국을 비교한 것이다.

질문	국가	갑국	을국
(가)		예	아니요
(나)		예	예

- ③ (나)에 ‘국민이 선거를 통해 행정부 수반을 직접 선출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원고측에서 주장하는 정답**
- ④ (나)에 ‘의회 내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존재하는가?’가 들어가면, 을국과 달리 갑국의 행정부 수반은 법률안 거부권을 가진다. **출제기관에서 발표한 정답**

피고가 2020. 12. 23.자로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21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정치와 법 과목에 대한 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하고 3번 답항도 정답으로 인정한다.

나. 제1심의 판단요약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다. 항소인의 불복 부분

- 제1심 판결에서 불복하는 주요 부분
각주 후단부를 제외한 “다. 구체적 판단” 전체
- 제1심 판결을 수긍할 수 없는 주된 이유
판결문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존재함

2. 제1심 판결의 부당성

이 사건 문제는 고3 수험생이 시험장에서 1분 남짓 풀어야 하는 것¹⁾에 비해, 다투는 논점이 많아서 목차를 먼저 제시합니다. 항소이유서만으로도 사건 전체를 개괄할 수 있도록 “가”에서 원고의 주장을 정리한 후, “나”~“자”에 걸쳐 제1심 판결의 부당성을 입증하겠습니다.

가. 원고들의 주장 ... 3쪽
나. ‘답변의 다름’으로부터 ‘정부형태의 다름’을 추론한 잘못 ... 7쪽
다. 수능 출제매뉴얼의 위반 ... 13쪽
라. 문제구조에 대한 잘못된 해석 ... 14쪽
마. 무관한 사실을 근거로 삼은 오류 ... 15쪽
바.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문제풀이지침으로 오인 ... 16쪽
사. 교육과정 근거에 대한 사실 오인 ... 18쪽
아. 책임귀속 오류에 따른 형평의 원칙 위반 ... 20쪽
자. 명백한 정답이 있을 때의 법리를 잘못 적용 ... 24쪽
차.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피고측 학회 의견서 ... 25쪽

1) 수능 사회탐구 ‘정치와 법’ 과목의 시험시간은 30분이며, 전체 20문항입니다.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의 핵심은 문제의 상자 내 첫 번째 문장 "a와 b는 각각 X와 Y 중 하나이다" 문장(이하 abXY문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해석의 후보는 두 가지입니다.

배타적 해석: a, b가 X, Y와 1:1대응되는 경우만 허용됨

포괄적 해석: a, b가 X, Y와 1:1대응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a, b가 모두 X인 경우와 모두 Y인 경우, 즉 2:1대응도 허용됨

결론부터 말하자면, abXY문장은 국어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수험적으로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는 국립국어원 답변(갑 제8호증), 전문가 의견서(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 및 **a와 b가 모두 X인 경우를 옳은 설명으로 판단한 교육청, EBS 기출문제**(갑 제14호증, 갑 제19호증)를 통해 뒷받침됩니다.

상식적으로도 "첫째와 둘째의 혈액형은 각각 A형이나 O 중 하나이다"라는 문장은 두 사람의 혈액형이 다르다는 주장을 함축하지 않습니다. 단지 둘의 혈액형이 A형이나 O형이 아닌 제3의 가능성(B형, AB형 등)이 없음을 보증해주는 문장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건 문항에 쓰인 "갑국과 을국의 정부형태는 각각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중 하나이다"라는 문장은 갑국과 을국의 정부형태가 다르다는 주장을 함축하지 않습니다. 단지, 두 국가의 정부형태가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가 아닌 제3의 가능성(의원집정부제 등)이 없음을 보증해주는 문장일 뿐입니다.

(2) 포괄적으로 해석했을 때 이 사건 문제의 풀이 및 정답이 어떠한지는 논리학자 및 정치학자의 의견서로 대신합니다. 먼저 前한국논리학회 회장을 역임한 OO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 OOO의 의견서(갑 제23호증)입니다.

*포괄적 해석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는 각각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중 하나이다.>

'~ 각각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중 하나이다.'라는 표현은 '갑국과 을국은 각기 대통령제이거나 의원 내각제라는 정부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갑국과 을국의 정부형태는 아래의 네 가지 가능성이 있다.

<갑 (대통령제), 을 (대통령제)>, <갑 (대통령제), 을 (의원내각제)>, <갑 (의원 내각제), 을 (대통령제)>, <갑 (의원 내각제), 을 (의원 내각제)>

또한 소수의 의원 수를 가진 정당에서도 대통령을 배출할 수 있으므로 의회 의석률과 관계된 지문에서의 정보는 첫 번째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따라서 “각각 ~ 중 하나이다”는 포괄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③의 정답 여부

갑국의 정부 형태와 을국의 정부형태가 모두 대통령제일 경우 (나)에 ③에서의 질문이 들어갈 수 있다. 양국의 정부 형태가 모두 대통령제일 경우는 앞에서 고려한 첫 번째 가능성에 해당한다. 따라서 **③은 정답으로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④의 정답 여부

④에서 “을국과 달리 갑국의 ...” 라는 표현은 ‘을국의 행정부 수반은 법률안 거부권을 갖지 못하지만 갑국의 행정부 수반은 법률안 거부권을 갖는다.’를 의미할 것이다. 만약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거부권을 가지지만 의원 내각제에서는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거부권을 갖지 못한다는 등식이 성립한다면 ④는 갑국은 대통령제이고 을국은 의원 내각제라는 것을 함축한다. 그러나 **④의 (나)에 대해 을국이 “예”에 해당한다는 것이 을국이 의원내각제라는 것을 보증해주지 못한다.** 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도 대통령을 배출할 수 있고 앞에서 보았듯이 양국이 모두 대통령제일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OO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OOO 의견서(갑 제13호증)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 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는 각각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중 하나이다

"라는 표현은 갑국과 을국이 모두 대통령제인 경우와 모두 의원내각제인 경우를 허용한다고 보는 게 맞다.

1-1. 출제자가 만약 한 나라가 대통령제면 다른 나라는 반드시 의원내각제여야 한다는 의도를 가졌다면, 두 나라의 정부형태가 같지 않다는 점을 명시했어야 한다. 수능시험처럼 제한된 시간에 많은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환경에 수험생들을 몰아넣는 방식의 시험에서 문언의 모호성과 관련해서 출제자가 불확실성의 혜택(the benefit of the doubt)을 누리게 된다면, 사실적으로든 논리적으로든 다양한 가능성을 포착할 수 있는 학생일수록 모호한 문언에서 특정한 결론을 이끌어내야 하는 부담을 강제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는 수험생들이 불확실성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 마땅하고, 따라서 해당 문항의 문언은 두 나라 정부 형태가 같은 경우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1-2. 답지 ④의 "을국과 달리"라는 표현은 자료의 첫 문장에서 모호하게 표현된 사항을 특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추가 문구에 해당한다. 자료의 첫 문장을 배타적으로 해석한 수험생이라면 "을국과 달리"가 그 자료의 첫 문장 안에 함축된 의미라 여길 수 있었겠지만, 자료의 첫 문장을 포괄적으로 해석한 수험생이라면 부당한 추론으로 여겼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1-3. 답지 ④를 "(나)에 '의회내 과반 정당이 존재하는가?'가 들어가면, (가)에 '행정부 수반은 법률안 거부권을 가진다'가 들어갈 수 있는가?"로 바꿔 써보면 차이가 드러난다. 갑국에서는 35% 의석을 가진 정당의 지도자가 행정부 수반으로서 법률안 거부권을 가지고, 을국에서는 65% 의석을 가진 정당의 지도자가 행정부 수반으로서 법률안 거부권이 없는 경우가 가능한가를 묻는다면 답은 "가능하다"가 된다. 답지를 이렇게 바꿔 썼다면 ④는 논란의 여지가 없이 맞는 답이 되었을 것이다. 반면에 "갑국에서는 35% 의석을 가진 정당의 지도자가 행정부 수반으로서 법률안 거부권을 가지고, 을국에서는 65% 의석을 가진 정당의 지도자가 행정부 수반으로서 법률안 거부권이 없는 경우 말고는 다른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이러한 결론은 제시

된 조건들로부터 도출될 수 없다. 을국이 대통령제일 가능성이 배제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출제된 답지 ④는 이를 주장하는 셈이다.

1-4. 답지 ③은 만일 출제자가 "의원내각제에서는 행정부 수반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는데 비해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 수반을 국민이 직접 선출한다"고 생각했고, 이 생각이 맞다고 양보하더라도, 원고측에서 주장하듯이 자료의 첫 문장을 포괄적으로 이해한다면 맞는 답이 되므로 복수 정답으로 인정해야 한다.

(후략)

(3) 이외에도 원고 주장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써주신 전문가들이 많은데, 분량상 1심 재판부에서 요약한 내용으로 대신합니다.

○ ○○고등학교 국어교사 ○○○(갑 제9호증)

- 포괄적 해석이 우리의 문법 직관에도 부합함
- 각각이라는 말은 주체요소 간의 서로 다른과는 필연적 관계는 아님
- 갑국과 을국의 정부형태는 서로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어서, 두 국가의 정부형태가 서로 같은 경우를 문장의 의미 해석에서 배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대학교 국문학 박사 ○○○(갑 제10호증)

- '각각 --- 와 --- 중의 하나이다'라고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갑국과 을국은 모두 대통령제, 내각제의 가능성을 갖고 있음
- '각각'이라는 명사는 '하나하나마다'의 의미로서 그 자체로 어떤 1:1의 대응관계를 갖지 않고 개방적으로 쓰임

○ ○○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수 ○○○(갑 제11호증)

- 'a와 b가 각각 X와 Y 중 하나이다'가 a와 b가 모두 X이거나 모두 Y인 경우를 허용함
- 시험 출제자가 배타적 해석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언어구조들, 예를 들어 'a와 b 중 하나는 X이고, 다른 하나는 Y이다', 'a와 b는 X와 Y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등이 충분히 존재함

○ 철학박사 000(갑 제12호증)

- 이 사건 문장을 빼고, 제시문 어디에도 갑국의 정부형태와 을국의 정부형태가 하나는 대통령제이고 다른 하나는 의원내각제라고 주장하는 맥락이 없음
- 묵시적 맥락뿐만 아니라 명시적 맥락에서도 갑국의 정부형태와 을국의 정부형태가 하나는 대통령제이고 다른 하나는 의원내각제라고 주장하는 맥락은 없음

○ 00대학교 철학과 교수 000(갑 제26호증)

- 이 사건 문장은 배타적 선언 또는 포괄적 선언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문제 지문을 수험자의 자의적 해석에 맡기는 것은 잘못이고, 자의적 해석을 예방하기 위한 언어적 장치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 출제자의 잘못임
- 문제 지문 중 어디에서도 애매한 구조를 포괄적 선언으로 읽지 않고 배타적 선언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지시한 부분은 발견되지 않음

정리하자면, 배타적 해석 하에서는 피고의 주장처럼 답항 4만이 유일한 정답이지만, 포괄적 해석 하에서는 원고의 주장처럼 답항 3만이 유일한 정답입니다. 다시 말해, 이 사건 문제는 해석과 무관하게 명백히 정답으로 판단되는 답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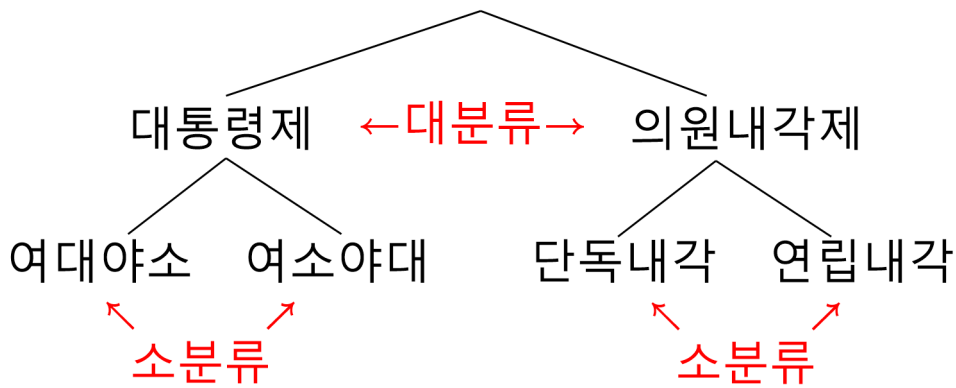
이상의 이해를 바탕으로 제1심 재판부의 잘못을 하나하나 지적하고자 합니다.

나. '답변의 다름'으로부터 '정부형태의 다름'을 추론한 잘못

사실을 오인한 판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하 밑줄 처리는 원고가 했습니다.)

가) 먼저 이 사건 문제의 전체 문항 및 답항의 지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문장의 아래 제시된 표에서 (가) 질문에 대하여 '갑국 예, 을국 아니요'라는 답변이 기재되어 있는 점, 2번 답항에 '갑국과 달리' 을국의 의회 의원은 각료를 겸직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4번 답항에 '을국과 달리' 갑국의 행정부 수반은 법률안 거부권을 가진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문제는 갑국과 을국의 정부형태가 다름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표의 (가) 질문에 상반된 답변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갑국과 을국의 정부형태가 다를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판단할 수 없습니다. **동일한 정부형태 내에서도 의석률에 따라 정치현상이 다르다면, 상반된 답변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통령제일 경우에도 여소야대와 여대야소로 정치현상이 다를 수 있고, 의원내각제일 경우에도 단독정부와 연립정부로 정치현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고등학교 '정치와 법' 교과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갑 제30호증, 갑 제 31호증)

무엇보다 이러한 **대분류-소분류 구분·비교**는 피고가 출제한 기출문제에도 여러 차례 등장한 적 있습니다. 정부형태 '간' 구분(일명 **대분류**)뿐만 아니라 정부형태 '내' 정치현상 차이(일명 **소분류**)에 대한 대표적인 기출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1학년도 9월 모의평가 '정치와 법' 18번(갑 제²22호증)

정당 의석률에 따라 **대통령제 국가 갑국과 병국을 여소야대-여대야소로 구분하고, 의원내각제 국가 을국과 정국을 단독정부-연립정부로 구분하여 비교하는 문항**

● 2015학년도 수능 '법과 정치' 8번(갑 제21호증)

서로 동일한 의원 내각제 국가인 갑국과 을국을 비교하는 문항

- 2014학년도 6월 모의평가 '법과 정치' 5번(갑 제⁴22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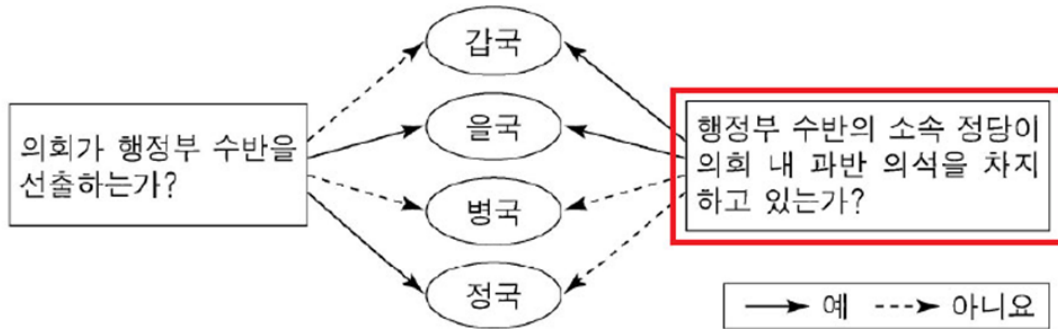
A국이 정당 의석률에 따라 의원내각제일 경우 연립정부, 대통령제일 경우 여소야대인
지를 판단하는 문항

- 2007학년도 수능 정치 14번(갑 제¹22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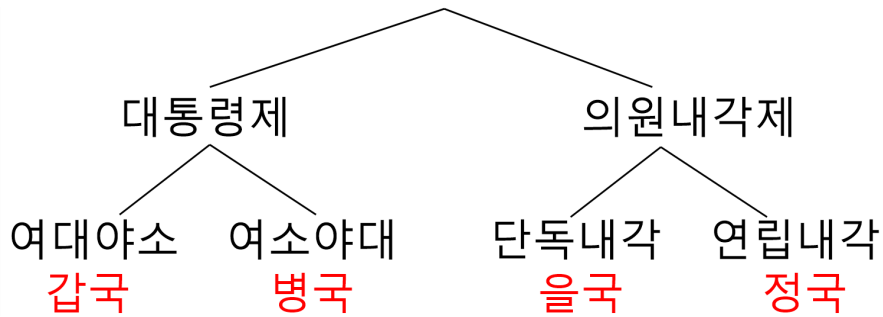
대통령제인 A국의 시기별 의석률에 따른 여대야소-여소야대 비교하는 문항

(2) 특히 이 사건 불과 3개월 전 피고가 시행한 2021학년도 9월 모의평가 18번 문항(갑 제²22호증)은, 수능을 준비하는 평균 수준의 수험생은 모두 풀어봤을 문항이므로, 이를 예로 들어 '상반된 답변'의 의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8. 그림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단, 갑국~정국의 정부 형태는 각각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중 하나이다.)



왼쪽 상자에 대한 상반된 대답에 따라 을국과 정국은 의원내각제, 갑국과 병국은 (의원내각제가 아니므로) 대통령제로 대분류됩니다. 그런데 같은 정부형태끼리도 오른쪽 상자에 대한 대답이 상반되어 소분류됩니다. 즉, 왼쪽 상자는 서로 다른 정부형태 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묻기 위해 제시되었지만, 오른쪽 상자는 같은 정부형태 내 차이점을 묻기 위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자의 상반된 답변에 따라 갑국~정국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특히 이 문제의 4번 답항을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④ 갑국에 비해 병국은 행정부 정책 추진을 위한 법률 제·개정이 용이할 것이다.

대통령제 국가인 갑국과 병국을 비교·분석(소분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4번 답항이 틀린 이유는 갑국과 병국을 뒤집어서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대통령제지만, 병국에 비해 갑국이 행정부 정책 추진을 위한 법률 제·개정이 용이할 것이라고 설명해야 옳은 설명이 됩니다.

참고로 2007학년도 수능 정치 14번(갑 제122호증)도 동일한 내용을 묻는 문제입니다.

- ㄴ. 여당 의석률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 제출 법률안의 가결률은 낮아진다.
- ㄷ. 여대야소(與大野小)인 경우가 여소야대인 경우보다 정부 제출 법률안의 가결률이 높다.

2007학년도 수능 정치 14번(갑 제122호증)

(3) 이외에도 2014학년도 6월 모의평가 법과 정치 5번(갑 제422호증)의 3번, 4번 답항 및 해당 문제에 대한 '문제 및 정답 이의 신청 관련 답변자료'를 보면, 피고 평가원은 동일 정부형태 내에서도 정당 의석률에 따른 소분류를 묻고 있음이 명시적으로 확인됩니다.

③ 의원 내각제 국가라면 2006년에는 연립 정부가 구성된다.

④ 대통령제 국가라면 2010년에는 여소야대의 정국이 형성된다.

[문제 및 정답 이의 신청 관련 답변 자료] (피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작성)

본 문항의 목적은 선거구제의 특징, 정부형태와 의석률의 관계에 따른 정치 현상을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입니다.

2014학년도 6월 모의평가 법과 정치 5번(갑 제422호증)

(4) 이처럼 피고는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이 의회 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가” 여부로 동일한 정부형태를 소분류하는 문제를 14년 전부터 불과 이 사건 3개월 전까지 꾸준히 출제해왔습니다. 또한 이 사건 문제의 지문 두 번째 문장에도 “행정부 수반이 소속된 정당의 의회 의석률은 갑국 35%, 을국 65%이며, 양국 모두 무소속 의원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따라서 평균수준의 수험생은 갑국과 을국이 서로 다른 정부형태일 가능성뿐만 아니라, 동일 정부형태지만 정당의석률에 따라 정치현상이 다를 가능성까지 고려하는 것이 결코 합리적입니다.

(5) 그렇다면 이 사건 문제의 3번 답항이 실제로 옳은 설명인지 판정해보겠습니다.

③ (나)에 ‘국민이 선거를 통해 행정부 수반을 직접 선출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원고측에서 주장하는 정답**

(나)에 ‘국민이 선거를 통해 행정부 수반을 직접 선출하는가?’가 실제로 들어가면 다음과 같습니다.

5.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는 각각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중 하나이다. 행정부 수반이 소속된 정당의 의회 의석률은 갑국 35%, 을국 65%이며, 양국 모두 무소속 의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표는 질문에 따라 갑국과 을국을 비교한 것이다.

질문	국가	갑국	을국
(가)		예	아니요
국민이 선거를 통해 행정부 수반을 직접 선출하는가?		예	예

이로부터 교육과정상 추론되는 내용은 세 가지로서, ①[대분류] 갑국과 을국이 모두 대통령제이며, 지문 두 번째 문장에 의해 ②[소분류] 갑국은 여소야대, 을국은 여대야소이며, 따라서 ③[교과서 및 기출문제]갑국에 비해 을국은 행정부 정책 추진을 위한 법률 재·개정이 용이할 것이다 등입니다. ③은 앞서 살펴본 2021학년도 9월 모의평가 18번 문항(제²22호증) 4번 답항의 표현을 원용한 것이며, 갑국과 을국의 차이점이므로 질문 (가)와 관련지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추론하는 것은 기존 기출문제와도 정합적이며, 논리적 결함이나 교육과정 위반이 없습니다. 따라서 3번 답항은 포괄적 해석 하에서 문제구조상 아무런 모순없이 꼭 들어맞는 유일한 정답입니다. (포괄적 해석 하에서 4번 답항이 정답이 될 수 없는 이유는 “가. 원고들의 주장”에 인용한 두 분의 전문가 의견서(갑 제13호증, 갑 제23호증)에 논증되어 있습니다.)

(6) 종합하면, ‘답변의 다름’으로부터 ‘정부형태의 다름’은 추론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 문제의 질문 (가)는 공란입니다. (가)에 들어갈 질문이 확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가)에 대한 갑국과 을국의 답변이 다르다는 이유로 갑국과 을국이 다른 정부 형태를 가진다고 판단하는 것은 명백한 논리적 오류입니다.

다. 수능 출제매뉴얼의 위반

사실을 오인한 판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먼저 이 사건 문제의 전체 문항 및 답항의 지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문항의 아래 제시된 표에서 (가) 질문에 대하여 '갑국 예, 을국 아니요'라는 답변이 기재되어 있는 점, **2번 답항에 '갑국과 달리' 을국의 의회 의원은 각료를 겸직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4번 답항에 '을국과 달리' 갑국의 행정부 수반은 법률안 거부권을 가진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문제는 갑국과 을국의 정부형태가 다를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평균수준의 수능 수험생은 피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개한 『수능 출제 매뉴얼-사회탐구』의 내용을 직간접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 하나는 **“문항의 답지들의 내용이 상호 독립적이어야 한다.”**(갑 제20호증)는 것입니다. 이처럼 각 답항은 다른 답항의 내용에 의존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문제의 **3번 답항을 판단할 때 2, 4번 답항을 고려하는 일은 출제매뉴얼상 수능 수험생이 하지 말아야 할 행위입니다.**

(2) 게다가 2번 답항은 출제기관조차 **틀린 설명**으로 판단했으며, 4번 답항은 “가. 원고들의 주장”에서 살폈듯, 포괄적 해석하에서 역시 **틀린 설명**으로 판단됩니다.

(3) 종합하면, 정답을 고를 때 다른 답항의 내용을 고려하는 일은 수능 출제매뉴얼을 위반합니다. **“갑국과 을국의 정부형태가 다름”은 제시된 지문과 자료를 통해 추론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 내용적으로 틀린 답항을 통해 거꾸로 짐작하는 일은 평균 수준의 수험생에게 허락되는 풀이기술이 아닙니다.** (사교육에서 이런 풀이기술을 가르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출제기관이나 법원에서 이런 입장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라. 문제구조에 대한 잘못된 해석

사실을 오인한 판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문제를 구조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표에 기재된 (가) 질문에는 갑국과 을국이 상반되는 대답을, (나) 질문에는 같은 대답을 하고 있으므로, **1 내지 5 답항**에서 제시하는 문장을 (가) 질문에 넣어서 갑국과 을국의 차이점을, (나) 질문에 넣어서 갑국과 을국의 공통점을 각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사건 문제가 정부형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묻기 위한 구조**를 취하고 있으므로, 포괄적 해석으로 갑국과 을국이 서로 같은 대통령제 또는 의원내각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출제의도 및 문제구조에 반하는 해석으로 보인다.

(1) 앞서 “다. 수능 출제매뉴얼의 위반”에서 상술했듯, **명백히 틀린 설명인 1번 내지 5번 답항**을 고려하여 문제를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2) 앞서 “나. ‘답변의 다름’으로부터 ‘정부형태의 다름’을 추론한 잘못”에서 상술했듯, 각 국가는 정부형태로 대분류될 수도 있지만, **같은 정부형태 내에서도 정당의식률에 따라 소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 문제 지문의 두 번째 문장에도 “행정부 수반이 소속된 **정당의 의회 의석률**은 갑국 35%, 을국 65%이며, 양국 모두 무소속 의원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정보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피고의 기출문제를 충실히 풀어온 학생들일수록, 같은 정부형태 내 소분류에 대해서도 고려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3) 종합하면, 평균 수준의 수능 수험생이라면 문제구조를 고려하더라도, 제시된 근거만으로는 정부형태 ‘간’ 비교가 전부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정부형태 ‘내’ 비교 가능성(소분류)을 열어둔 채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1심 재판부는 정부형태 ‘내’ 비교 가능성(소분류)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이 있습니다.**

마. 무관한 사실을 근거로 삼은 오류

논리를 오인한 판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 실제로 피고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문제와 동일한 구조의 문제를 2019년 수능 시험 법과 정치 과목 5번 문제로 출제하였고, 해당 기출문제에서도 대통령제와의 원 내각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묻기 위하여 이 사건 문장의 배타적 해석을 전제로 하여 문제가 출제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다.

(1) 해당 문항은 수능 기출문제 중 2019학년도 기출문제 5번(을 제4호증)으로 피고가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는 원고측이 2021년 9월 14일에 제출한 2차 준비서면 “4. 또다시 피고의 ‘완벽한 오류’”라며 반박한 적이 있습니다. 해당 문항은 명시적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배타적으로 해석하든 포괄적으로 해석하든 아무런 이상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즉, 해석에 따라 정답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1심 재판부에서 이에 대해 검토를 누락한 것으로 보이므로, 판결에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2) 설령 제1심 재판부의 판단 “라)”가 전적으로 옳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문항에 대한 다툼과는 무관합니다. 제1심 재판부의 추론은 실상 같은 유형의 잘못을 더 많이 범하면 어느 순간 잘못이 아닌 것이 되어버린다는 신비스러운 규범을 도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규범은 상식적이지도 않고 법적 추론으로서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재판부에서 더욱 잘 아시겠지만, 간통죄 위헌성 다툼에서 “간통죄는 62년 간 유지되었으며 4번에 걸쳐 합헌 판결이 났다”라는 사실은, 간통죄가 위헌이 아니라는 주장의 적합한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존재성은 적절성을 함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배타적 해석만이 옳은 문항이 이전에도 출제된 적 있고, 이에 대해 이의제기가 없었다는 사실은 이 사건 문제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출제기관에서 잘못된 판단을 오랫동안 반복해왔고, 그간 잘 드러나지 않았음을 보여줄 뿐입니다. 피고가 abXY문장을 근거 없이 배타적으로 해석해왔다면, 그것은 오히려 더욱 많이 비난받아야 하고, 문제출제과정에서 상식과 국어학적인 규범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특별히 시급하게 그런 잘못을 확인하고 실효적으로 방지할 필요성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제1심 재판부는 각주를 통해 **“향후 이 사건 문장과 동일한 구조의 문장을 사용하여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 'a와 b는 서로 다르다'라는 취지의 단서를 추가하여 의미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을 지적하여 둔다”**라며 향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주의를 주는 데 그쳤을 뿐, 이 사건 문제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원고들의 고통을 연장시켰습니다.

바.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문제풀이지침으로 오인

사실을 오인한 판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문제가 출제된 과목은 국어 과목이 아니라 사회과 교육과정에 속하는 과목이고, 초·중등학교 교육과정(2015. 9. 23. 교육부 고시 제2016-74호로 개정된 것) 중 사회과 교육과정에 관한 [별책 7]에서는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정치 제도를 정부형태(의원내각제, 대통령제) 중심으로 탐구한다”**라고 제시되어 있고, 전형적인 정부형태인 의원내각제의 특징과 대통령제의 특징을 이해하고 탐구하는 것을 중요한 학습 요소로 제시하고 있으며, **정치와 법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특징을 공통점 및 차이점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교육 받았고, 이에 피고도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비교하는 형태의 문제를 모의평가 및 기존 수학적능력 시험에서 지속적으로 출제하여 왔다.** 따라서 평균수준의 수험생이라면 출제자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비교하기 위하여 이 사건 문제를 출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갑국과 을국의 정부형태를 서로 다르게 해석하여 문제를 푸는 것이 출제의도에 부합하는 해석으로 보인다.

(1) 제1심 재판부는 교육과정을 오인했습니다. 교육과정에 제시된 한 줄짜리 성취기준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정치 제도를 정부형태(의원내각제, 대통령제) 중심으로 탐구한다”**라는 문장으로부터, **수능 시험지에 두 국가가 나오면 무조건 정부형태가 다르다고**

판단하라는 문제풀이지침은 어떤 식으로도 도출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교과서에는 정부형태 중 하나로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특성이 모두 나타나는 '의원 정부제'(혹은 '의원집정부제')도 소개되며, 2022학년도 수능 '정치와 법' 6번으로도 이 내용이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별책7을 근거로 이 사건 문제에서 갑국과 을국의 정부형태가 다르다고 판단하는 것은 논리적 오류입니다.

(2) 교과서에는 다양한 정부형태 중 의원내각제,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탐구한 내용이 상세히 실려 있으며, 여기서 대분류(의원내각제, 대통령제뿐만 아니라 소분류(단독내각-연립내각, 여대야소-여소야대)도 다뤄집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대분류 및 소분류를 구분하는 식으로 교육 받았고, 피고도 대분류상의 공통점과 차이점뿐만 아니라 소분류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묻는 문항을 다수 출제해왔습니다.

(3) 게다가 『수능 출제 매뉴얼 - 사회탐구』 문항제작지침에는 "**●출제자의 출제의도가 수험자에게 정확히 전달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갑 제26호증). 즉, 출제의도는 문항제작시 구체적 표현을 통해 전달되어야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객관식 시험 문제의 특성상 출제의도와 답항 선택의 지시사항은 시험문제 자체에서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 없이 문언의 한계를 벗어나 임의로 출제자의 숨겨진 주관적 출제의도를 짐작하여 판단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출제 오류가 엿보이는 상황에서, 출제자의 명시적·묵시적 의도를 고려하여 1개의 정답이 도출되는 쪽으로 선택할 것을 응시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다(서울행정법원 2021. 4. 29. 선고 2020구합76418 판결 [불합격처분취소])

(4) 따라서 만약 교육과정 성취기준까지 고려해야만 이 사건 문제의 정답을 고를 수 있다면, 역설적으로 이 문항이 출제오류임을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출제의도가 시험문제 자체에서 파악되지 않는다는 고백과 같기 때문입니다.

사. 교육과정 근거에 대한 사실 오인

사실을 오인한 판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문제가 출제된 과목은 국어 과목이 아니라 사회과 교육과정에 속하는 과목이고, 초·중등학교 교육과정(2015. 9. 23. 교육부 고시 제2016-74호로 개정된 것) 중 사회과 교육과정에 관한 [별책 7]에서는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정치 제도를 정부형태(의원내각제, 대통령제) 중심으로 탐구한다"**라고 제시되어 있고, **전형적인 정부형태인 의원내각제의 특징과 대통령제의 특징을 이해하고 탐구하는 것을 중요한 학습 요소로 제시하고 있으며, (후략)**

(1) 앞서 주장했듯, 교육과정의 한 줄짜리 성취기준은 이 사건 문제의 구체적 풀이지침이 될 수 없습니다.

(2) **설령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근거하더라도, 갑국과 을국의 정부형태가 다르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첫째, **피고가 제시한 이 사건 문제의 교육과정 근거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정치 제도를 정부형태(의원내각제, 대통령제) 중심으로 탐구한다"는 고등학교 '정치와 법'에 대한 성취기준이 아니라, 중학교 '일반사회 영역' 성취기준[9사(일사)03-03]입니다(갑 제27호증)이며, '중학교 사회 ① 교과서'에서 다루지는 내용입니다.**

앞서 "나. '답변의 다름'으로부터 '정부형태의 다름'을 추론한 잘못"에서 구체적 사례를 보였듯, 고등학교에서는 정부형태 '간' 구분(대분류)뿐만 아니라 정부형태 '내' 정치현상 구분(소분류)에 대해서도 배우며 문제화됩니다. 따라서 사회과 교육과정에 관한 [별책 7] 중 **중학교 일반사회 성취기준을 근거로, 이 사건 수능 문제의 출제의도가 '갑국과 을국의 정부형태가 다르다'임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 심지어 **피고가 시험 직후 공표한 교육과정 근거는 소송에서 주장한 근거와 다릅니다.** 원고는 1심 패소 후 판결문을 검토하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2심에서 다음 증거를 제출합니다. 피고가 2021학년도 수능 후 20일 뒤에 공표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교육과정 근거'(갑 제28호증)를 보면, 이 사건 문제의 출제의도는 "민주 국가의

정부 형태를 이해하고, 우리 헌법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를 탐구한다.”입니다. 이는 ‘별책7’에서 성취기준 [12정법02-01]로 제시되어 있습니다(갑 제29호증). 보다시피, 이는 단순히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만을 비교(대분류)하는 내용만은 아닙니다.

<p>피고가 소송시 주장한 교육과정 근거 * 제1심 판결문에서 인용</p>	<p>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정치 제도를 정부형태(의원내각제, 대통령제) 중심으로 탐구한다. _출처: 중학교 ‘일반사회 영역’ 성취기준 [9사(일사)03-03] (중학교 사회① 교과서 9단원에서 다뤄짐)</p>
<p>피고가 공표한 실제 교육과정 근거</p>	<p>민주 국가의 정부 형태를 이해하고, 우리 헌법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를 탐구한다. _출처: 고등학교 정치와 법 과목 성취기준 [12정법02-01] (고등학교 정치와 법 교과서 2단원에서 다뤄짐)</p>

셋째, 고등학교 ‘정치와 법’ 교육과정 근거에 따라 “우리 헌법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를 탐구”를 잘 마친 평균적인 수험생이라면, 우리나라 정부형태가 기본적으로 대통령중심제이며, “행정부 수반이 소속된 정당의 의회 의석률”에 따라 여대야소일 수도, 여소야대일 수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3번 답항이 참일 경우 ①[대분류] 갑국과 을국이 모두 대통령제이며, 지문 두 번째 문장에 의해 ②[소분류] 갑국은 여소야대, 을국은 여대야소이며, 따라서 ③[교과서 및 기출문제]갑국에 비해 을국은 행정부 정책 추진을 위한 법률 재·개정이 용이할 것이다(차이점) 등을 교육과정 내에서 합당하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3) 종합하면, 출제기관은 소송시 이 사건 문제에 대한 교육과정 근거(성취기준)를 헛갈렸거나, 혹은 악의로 중학교 일반사회 성취기준이 이 사건 문제의 출제근거인 양 주장했습니다. 만약 전자라면, 평균수준의 수험생이 이 사건 문제의 교육과정 근거를 특정 지어, 이를 근거로 문제를 푼다는 것을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후자라면 출제기관은 출제오류를 감추기 위해 자신이 공표한 자료와도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을 한 셈입니다.

아. 책임귀속 오류에 따른 형평의 원칙 위반

사실과 논리를 오인한 판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 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포괄적 해석은 이 사건 문제의 구체적인 문구, 전체 구조, 출제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이 사건 문장만을 지나치게 지엽적으로 해석한 것으로서, 평균수준의 수험생이 이 사건 문장에 의하여 문제에서 제시된 위와 같은 단서들을 무시한 채 **'갑국'과 '을국'의 정부형태가 같은 이례적인 경우를 상정하여 문제를 풀이**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문제의 구체적인 문구, 전체 구조, 출제자의 의도”에 대해서는 앞서 충분히 비판하였으므로, 여기서는 “**'갑국'과 '을국'의 정부형태가 같은 이례적인 경우를 상정**”에 대해서만 언급하겠습니다. **만약 갑국과 을국의 정부형태가 같은 경우가 이례적일 뿐 이 사건 문제에서 허용되는 경우의 수라면, 원고들이 이례적인 경우까지 꼼꼼히 검토하여 답항을 논리적으로 판단한 것은 오히려 높이 평가되어야 마땅합니다.** 실제로 원고들은 모두 당해 수능에서 국어 1등급, 수학 1등급을 받은 최상위권 학생들입니다. 또한 피고가 시행한 2021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정치와 법' 과목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받았던 학생들입니다. 참고로 이 정치와 법 과목은 원점수 **50점 만점**인 시험이며, 원고들이 받았던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A	B	C	D	E
6월 모의평가	50	50	48	-	48
9월 모의평가	50	46	48	-	46

참고로 원고 D는 반수생이라 모의평가를 응시하지는 않았지만 이전의 **2018, 2019, 2020학년도 수능 모두에서 1등급(상위 4% 이내)**을 받았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1심 판결문을 검토한 000 철학박사는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갑 제32호증)

따라서 이 사건 문제에서 배타적 해석만을 인정하는 것은 전혀 합당하지 못합니다. 이점은 포괄적 해석을 취한 수험생들이 어떤 수험생이었을지 고려해 보아도 그러합니다. 배타적 해석이 정치체제가 다른 2가지 경우만을 고려한데 비해 포괄적 해석은 정치체제가 같은 2가지 경우를 곱해 4가지 경우를 고려한 것입니다. 5번 문제에 대해 배타적 해석은 단순한 해석이지만 포괄적 해석이 교육과정 내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간 깊이 있는 해석입니다. 문제를 더 깊이있게 해석한 수험생이 오히려 낮은 점수를 받는 것은 정당하다 할 수 없습니다. 포괄적 해석을 한 수험생은 만약 문제가 배타적 해석만 하도록 명료하게 제시되었다면 충분히 출제기관이 발표한 대로 정답을 골랐을 것입니다. 이것은 5번 문제에 대해 배타적 해석만 인정하면 수험생들의 실력이 왜곡되게 측정된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3) 덧붙여서 “나. ‘답변의 다름’으로부터 ‘정부형태의 다름’을 추론한 잘못”에서 밝혔듯, ‘갑국’과 ‘을국’의 정부형태가 대통령제로 같지만, “행정부 수반이 소속된 정당의 의회 의석률”에 따라 여대야소-여소야대로 나뉘는 것(소분류)을 고려한 것은 “이례적인 경우”를 상정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4) 설령 피고의 출제의도와 동떨어진 이례적인 경우를 피고가 상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례적인 경우를 배제하도록 할 책임은 원고가 아니라 피고에게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피고는 그간 발표한 정답이 이례적인 경우에 성립하지 않을지라도 이의심사를 통해 복수정답 혹은 정답없음을 인정한 적이 여럿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5개를 통해, 이 사건 문제에 대한 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남을 보이고자 합니다.

● **이례적인 경우를 배제하지 못하여 복수정답을 인정한 사례(갑 제²24호증)**

2009학년도 6월 모의평가 수리 나형 28번 복수정답

본 문항의 x_n 은 n 의 양의 약수 중 짝수인 약수의 개수에서 홀수인 약수의 개수를 뺀 값이다. 따라서 이 문항에서 문자 m 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더라도 m 을 자연수로 간주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 경우 <보기> α 은 참인 명제가 되어 이 문항의 정답은 ④가 된다. 그러나 문자 m 에 제한을 두지 않았으므로 m 의 값으로 모든 실수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하여, 예컨대 $m=\log 2$ 가 <보기> α 의 반례가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문항에서는 ①도 정답으로 인정한다.

● **이례적인 경우를 배제하지 못하여 복수정답을 인정한 사례(갑 제³24호증)**

2017학년도 수능 과학탐구 물리Ⅱ 정답없음

논의 결과 비록 많은 학생들이 전형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출제 의도에 맞게 자기장 방향을 설정하여 문항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학회의 자문 결과와 같이 이의신청 내용에서 제기한 사항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기> α 은 자기장의 방향을 특정할 수 없어 조건에 따라 '참'과 '거짓'이 달라지므로 <보기> α 을 '거짓'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보기> β 을 '거짓'으로 판단할 때, 5개의 답안 중 '참'인 α 만으로 구성된 답안이 없으므로 '정답 없음'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의심사위원회에서는 이를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 **중의적 해석 가능성으로 인해 복수정답을 인정한 사례(갑 제⁴24호증)**

2015학년도 수능 과학탐구 생명과학Ⅱ 8번 복수정답

본 문항은 교육과정에 위배되지 않지만 표현상의 문제로 인해서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보기>의 선택지 α 과 β 을 모두 '참'으로 판단하거나 <보기>의 선택지 β 만 '참'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④번 외에 ②번도 정답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이론적 상황을 배제하지 못하여 복수정답을 인정한 사례(갑 제524호증)

2018학년도 9월 모의평가 과학탐구 지구과학I 8번 복수정답

관련 학회에 자문을 의뢰한 결과, 북동쪽으로 진행되는 경우와 같은 판 운동 사례는 지구상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있었고, 이를 고려했을 때 실제 상황에서의 정답은 ①번이 가장 타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의 실제 상황 외의 이론적인 상황에서는 두 가지 경우가 모두 가능할 수 있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이에 이론적인 상황을 소재로 구성된 문항으로 학습한 학생들의 혼란을 방지하는 취지에서 ①번 외에 ⑤번도 정답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해석에 대한 명시적 단서를 제시하지 않아서 복수정답을 인정한 사례(갑 제124호증)

2010학년도 6월 모의평가 직업탐구 프로그래밍 13번 복수정답

주어진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로 나오는 좌표값 (x, y) 를 (행, 열)로 해석할 수 있는 단서가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의 제기 내용과 같이 좌표값 (x, y) 를 (열, 행)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와 같이 해석한다면 해독결과가 '대한민국'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문항은 ②번 이외에 ①번도 정답으로 인정됩니다.

(5)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문제를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풀었을 뿐이므로, 설령 이 과정에서 재판부나 출제기관이 느끼기에 '이례적인 경우'를 상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러한 경우를 배제하는 단서를 누락한 피고의 잘못일 뿐, '이례적인 경우'까지 살펴본 원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설령 진실로 이례적인 경우라 하더라도, 그간 피고의 처분에 비춰봤을 때 형평의 원칙에 따라 이 문항도 복수정답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자. 명백한 정답이 있을 때의 법리를 잘못 적용

사실과 논리를 오인한 판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 객관식 시험에서 정답이 1개뿐인 점을 감안하면 여러 개의 답항 중 어느 모로 보나 정답인 답항만을 정답으로 골라야 하고, 명백히 정답으로 판단되는 답항 외에 표현이 다소 애매하거나 불분명하여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정답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닌 것으로 볼 수도 있는 답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답항은 정답이 아닌 것으로 출제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일부 다른 답항의 표현이 다소 애매하거나 불분명하다는 사유만으로 그 출제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1) 위에 제시된 법리는 명백히 정답으로 판단되는 답항이 있을 때에 한하여 적용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모두 종합했을 때, 피고가 정답으로 발표한 4번 답항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3번 답항에 비해 월등히 우월하고 논리적, 합리적, 중립적, 객관적으로 최선의 선택에 해당한다거나 어느 모로 보나 정답일 수밖에 없다고 볼 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 문제는 abXY문장의 해석에 따라, 포괄적으로 해석하면 3번 답항만이 유일한 정답인 반면, 배타적으로 해석하면 4번 답항만이 유일한 정답입니다. 이때 배타적 해석보다 포괄적 해석이 자연스럽고 보편적이라는 점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들이 의견서를 제출해주었습니다. 제1심 판결문도 각주를 통해, “향후 이 사건 문장과 동일한 구조의 문장을 사용하여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 'a와 b는 서로 다르다'라는 취지의 단서를 추가하여 의미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을 지적하여 둔다”며, 이 사건 문제에 배타적 해석을 위한 명시적 단서가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2) 철학박사 000도 의견서(갑 제32호증)를 통해 “어느 모로 보나 정답인 답항”이나 “명백히 정답으로 판단되는 답항”은 5번 문제에서는 없습니다. 대신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정답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닌 것으로 볼 수도 있는 답항”만 있는데 답항 3과 답항 4가 그러합니다. 따라서 답항 4를 정답으로 인정하려면 답항 3 역시 정답으로 인정해야만 합니다.”임을 지적했습니다.

(3) 따라서 이 사건 문제에 적용되어야 할 법리는 “바)가 아니라 아래와 같으며, 이에 따라 3번 답항도 이 사건 문제의 복수정답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① 출제자가 선정한 정답 이외에도 논리적, 합리적, 중립적, 객관적으로 선택 가능한 답항이 있다면, 당해 문제에 대하여는 그 자체로 중복 정답을 인정하여야 한다. ② 또한 출제자가 자신의 출제의도(뒤에서 보는 '정답 판별기준'과 같은 의미이다)에 따라 선정한 정답이 일응 논리적, 합리적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문제의 출제의도가 응시자에게 제시되지 않은 상태이고, 그 답항 외에 논리적, 합리적으로 선택 가능한 답항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출제자가 선정한 당해 문제의 정답은 중립성 내지 객관성을 상실하므로, 출제자가 선정한 답항 외에 논리적, 합리적으로 선택 가능한 답항 역시 정답으로 처리하여 중복 답안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만약 ①, ②의 경우에 출제자가 자신이 선정한 답항만을 정답으로 처리하고 다른 선택 가능한 답항을 오답으로 처리한다면, 이러한 정답의 선정과 채점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서울행법 1999.09.14 선고 99구3361)

차.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피고측 학회 의견서

(1) 이 사건과 유사한 사례로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정답취소 사건(2014누40724)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2015가합659)이 있습니다. 이 사건 원고들은 1심 패소 후 2심에서 승소했는데,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아래와 같이 피고측 학회 의견서를 배척했습니다.

이의심사실무위원회의 다수의 견과 한국경제지리학회 및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는 이 사건 지문이 유럽연합과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총생산액 비교우열의 전반적인 추세를 묻는 내용이라고 정의하는 등 이 사건 문제와 지문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잘못을 저질렀다⁸⁾.

[각주8] 앞서 본 바와 같이 한국경제지리학회 및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는 2013. 11. 14. 이 사건 문제와 정답 결정의 오류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받고, 그 다음날 이의심사실무위원회의 다수의견과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동일하게 잘못된 답변을 피고 평가원에 회신하였는바, 그 답변에 소요된 시간, 답변 내용 오류의 유사성 등을 고려해 보면 그 답변들이 **학회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정상적인 과정을 통하여 작성된 것인지 의심이 든다.**(부산고법 2017. 5. 10. 선고 2016나55042 판결)

출제의도와 답항 선택의 지시사항은 시험문제 자체에서 객관적으로 파악되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도 없이 임의로 출제자의 숨겨진 주관적 출제의도를 짐작하여 판단할 수는 없고, **수험생이 문제에서 명시적으로 지시되지 않은 피고 평가원의 주장과 같은 출제자의 의도를 추론하여 이 사건 문제를 풀 수는 없으므로 피고 평가원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으며, 또한 피고 평가원의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전제에 선 관련 학회들의 자문 결과도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서울고법 2014. 10. 16., 선고, 2014누40724, 판결)

피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한국의 핵심적인 싱크탱크로서 학계에도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는 곳이므로, 이러한 의견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경북대학교 이정우 명예교수(한국장학재단 4대 이사장)도 신문칼럼을 통해 강하게 질타한 적 있습니다.

애당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 오류를 인정하고 모두 정답처리했다면 평가원의 체면 손상으로 끝나고 사태가 이렇게 악화되지는 않았을 텐데 평가원은 오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잘못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평가원은 지리학회 두 군데에 의견을 물었는데, 두 학회 모두 출제 오류가 아니라는 의견을 보내왔다. **이들 학회가 양심과 상식에 입각해서 의견을 보내주었더라도 일이 이렇게 꼬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평가원은 큰돈을 들여 대형 로펌 변호사를 6명이나 사서 소송으로 갔다. 1심 재판부가 정의와 상식에 맞는 판결만 내려주어도 피해를 줄일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1심 재판부는 정답이 없는 문제에 대해 정답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평가원의 손을 들어주었다.

정답이 있다고 주장한 1심 재판부의 논리는 도무지 수긍하기 어려웠다. 명백히 틀린 보기를 하나씩 소거해가면 정답이 나온다고 했다. 천만의 말씀. 틀린 답을 하나씩 소거해가면 정답은 없다. 문제에 오류가 없다고 주장했던 평가원과 교육부, 학회, 그리고 1심 재판부, 이들은 모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지식과 권위를 갖춘, 아니 갖추어야 하는 조직이다. 그런데 이들은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함으로써 스스로 얼굴에 먹칠했을 뿐 아니라 대표적 국가기관의 공신력마저 떨어뜨리고 수많은 수험생과 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실과 고통을 안겨주었다.

_출처: 이정우, "[시론]수능 '세계지리 8번'의 교훈", 경향신문, 2014년 10월 20일자

(2) (1)에서 살펴본 학회 의견서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서 피고측이 제출한 두 학회의 의견서도 신빙성이 의심스럽습니다. 두 학회가 근거로 든 교육과정, 기출문제, 문제구조는 앞서 “나. ‘답변의 다름’으로부터 ‘정부형태의 다름’을 추론한 잘못”~“사. 교육과정 근거에 대한 사실 오인”에 걸쳐 살펴봤듯 사실을 오인했거나 논리를 잘못 적용한 것들입니다. 과연 두 학회에서 이 사건 문제를 검토할 때 실제로 교육과정과 기출 문제를 살펴본 후 의견서를 작성했는지 심히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더구나 의견서를 제출한 'OOOOOOO학회' 임원구성을 보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소속 이사가 9명, 교육부 이사가 2명입니다. 구체적인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OOO(교육부, 사업홍보이사)

OOO(교육부, 이사), OOO(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사)

OOO(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사) OOO(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사)
 OOO(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사) OOO(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사)
 OOO(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사) OOO(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사)
 OOO(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사) OOO(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사)

이 정도면 자문의견이 아니라 자문자답으로 보입니다.

(3) 종합하면, 자문의견서에 포함된 사실오인과 논리오류, 학회와 피고의 관계, 과거 2014학년도 수능 출제오류 소송시 보여준 행태 등을 고려했을 때, 해당 학회의 의견서가 과연 신뢰할 만한 것인지, 외부 영향을 받지 않고 정상적인 과정을 통하여 작성된 것인지 합리적 의심을 거두기 어렵습니다.

3.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3번과 4번 답항 중 어느 하나가 확실한 답항이어서 다른 정답의 가능성을 배제할 만큼 우월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4번 답항만을 정답으로 채점한 것은 출제 및 채점에 있어서의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며, 제1심 재판부 또한 4번 답항이 명백히 정답으로 판단된다는 잘못된 가정을 전제로 판결했으므로 사실 및 법리를 오인한 잘못이 있습니다.

또한 제1심 판결은 그간 피고의 처분에 비춰볼 때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며, 판결문에 인용된 교육과정 근거는 중학교 1학년 사회 교과서에 해당될 뿐, 피고가 시험직후 공표한 교육과정 근거와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피고 평가원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해주시길 바랍니다.